

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화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9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5월 24일
발 의 자 : 김화숙, 김용석, 김정태, 문영민,
이태성, 김제리, 권수정, 오한아,
유 용, 이호대, 김호평, 조상호,
최기찬, 임종국, 이성배, 이준형,
이광호, 문병훈 의원 (18명)

1. 제안이유

- 야간시간대나 공휴일 등 약국이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대에 의료공백으로 경증 질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는 등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이 약사의 복약지도없이 상비 의약품을 오·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- 이에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시민, 관광객 등의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“공공 야간약국”을 지원함으로써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의약품의 오·남용 방지와 안전 사용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공 야간약국의 지정과 자발적 참여 확대 및 지원 정책의 추진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- 나. 야간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 야간약국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.
- 다.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.
- 라.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,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도·감독하며,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에 위반되는 경우에 지정의 취소 등 공공 야간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).
- 마. 공공 야간약국 참가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야간약국 운영에 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법인, 기관,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 법령 : 「약사법」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,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 야간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공공 야간약국”이란 「약사법」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중에서 서울시민과 관광객 등(이하 “시민 등”이라 한다)에게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.
2. “야간시간대”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시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공공 야간약국(이하 “야간약국”이라 한다)의 지원을 통해 시민 등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,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야간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·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야간약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공공 야간약국의 지정 등) ① 시장은 시민 등에게 야간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야간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야간약국의 지정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지원)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야간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야간약국의 관리) ①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야간약국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, 야간약국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야간약국이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운영부실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야간약국의 지정을 취소하고, 그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야간약국의 운영이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경고·시정명령·이행명령·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④ 제3항의 경고·시정명령·이행명령·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포상) 시장은 야간약국 참가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야간약국 운영에 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법인, 기관, 단체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